

Ⅲ. 2014년 개정 소득세제 평가

1. 고려사항 및 평가기준

- **(공제세율변화 효과)** 소득공제 시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세액공제율 간의 차이에 의해 소득세액이 변할 수 있음.
 - 즉, 총급여는 동일하더라도 소득공제 시 적용되는 **한계세율에 비해 세액공제율이 적으면 환급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증가함.**

- **(한계세율변화 효과)** 한계세율이 바뀔 만큼 과표소득이 변동되면¹⁹⁾ 소득세액이 변화할 수 있음.
 - 총급여는 동일하더라도 세제 개편으로 **한계세율이 증가하면 공제세율 변화에 따른 세 부담(공제세율변화 효과)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함.**

-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**‘총변화 효과’**는 ‘공제세율변화 효과’와 ‘한계세율변화 효과’의 합으로 나타남.
 - 최근의 연말정산 논란에서는 ‘공제세율변화 효과’만 고려된 측면이 있음.
 - 본고는 **‘한계세율변화 효과’까지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세제 개편 효과를 검토함.**

19) 세액공제 방식은 과표소득 결정에 공제가 미리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과세 대상소득의 증가로 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.

2. 소득계층²⁰⁾별 소득세제 개편 효과 분석

■ 소득공제 방식에서 과표소득 1,200만 원 이하인 소득자(저소득층)의 세 부담 변화

- (공제세율변화 효과) 소득공제 적용 시 한계세율보다 세액공제율이 커 추가적 환급액이 발생함(세 부담 감소).
 - 동 집단의 소득공제 적용 시 한계세율은 6%이며,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 12%, 의료비 및 교육비 15%임.
 - 연금저축은 불입액당 6% 만큼 추가적 환급액이 발생함.
 - 의료비, 교육비는 공제대상 금액당 9% 만큼 추가적 환급액이 발생함.
- (한계세율변화 효과) 한계세율 변화여부에 따라 세 부담 효과가 달라짐.
 - (한계세율 증가 시) 과표소득 구간이 '1,200만 원 이하'에서 '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'로 증가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함.²¹⁾
 - (한계세율 불변 시) 과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.
- (총변화 효과)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나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 세 부담은 감소함.
 - 한계세율변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보다 공제세율변화로 인한 추가 환급액이 크다면 세 부담이 줄어들고, 적다면 세 부담이 늘어남.

20) 소득계층은 '과표소득' 기준으로 최저 세율이 적용되는 '1,200만 원 이하' 소득자를 '저소득층'으로, 정부기준 중산층(총급여 5,500만 원 기준)이 속하는 '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' 소득자를 '정부기준 중산층'으로, 정부기준 중산층보다 소득이 조금 높아(예, 총급여 6천~7천만 원) '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'의 소득구간에 포함되는 소득자를 '실질적 중산층'으로 구분하여 살펴봄.

21) 한계세율은 6%에서 15%로 9%p 증가하고, 과세대상 소득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함.

■ 소득공제 방식에서 과표소득 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인 소득자(정부 기준 중산층 포함)의 세 부담 변화

- (공제세율변화 효과) 소득공제 적용 시 한계세율과 세액공제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.
 - 동 집단의 소득공제 적용 시 한계세율은 15%이며,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 12%, 의료비 및 교육비 15%임.
 - 연금저축은 불입액당 3%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(세 부담 증가).
 - 의료비, 교육비는 환급액의 변화가 없음(세 부담 불변).
- (한계세율변화 효과) 한계세율 변화여부에 따라 세 부담 효과가 달라짐.
 - (한계세율 증가 시) 과표소득 구간이 '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'에서 '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'로 증가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함.²²⁾
 - (한계세율 불변 시) 과표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.²³⁾
- (총변화 효과)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나 한계세율이 불변하는 경우 공제세율 변화효과에 의해 세 부담이 증가 혹은 불변함.

22) 한계세율은 15%에서 24%로 9%p 증가하고, 과세대상 소득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함.

23) 동일한 총급여(예, 6천~7천만 원, 혹은 정부기준 중산층 5,500만 원) 소득자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되더라도 과표소득이 '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' 구간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임.

3. 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

■ 조세 부담의 형평성 개선

- 세제 개편으로 인해 정부 기준 중산층(총급여 5,500만 원, 과표소득 4,600만 원 이하)의 추가적 세금 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, 저소득층은 추가적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은 개선됨.

■ 한계 과표소득자²⁴⁾의 조세 부담 급증

- 정부 기준의 중산층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근로자(과표소득 4,600만 원 초과)와 같은 한계 과표소득자는 한계세율 증가로 세 부담이 급증함.
 - (한계세율변화 효과) 예를 들어, 과표소득 4,6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5%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의 증가와 한계세율의 증가(15%→24%)로 세 부담이 급증함.
 - (공제세율변화 효과) 또한 소득공제 대상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24%이나, 세액공제율은 12% 혹은 15%이기 때문에 환급액이 감소함(세 부담 증가).
- 결국 최근의 연말정산 및 세법 개정 논란은 중산층의 세 부담 우려 때문이라기보다 한계 과표소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 때문임.
 - 한계 과표소득자는 소득공제 대상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한계세율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세 부담 발생과 같이 두 가지 요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함.

24) 동일한 총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도 세제 개편으로 과표소득이 증가하여 개편 전에 비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소득자로 정의됨.